

## 동물보건사 자격증 [ ]재발급 [ ]재부여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자격번호	발급일		년 월 일
신청인	성명	한글	한자
		영문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	자격	년 월 일 시행 제 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	
[ ] 재발급 사유	[ ]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[ ]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[ ]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		
[ ] 재부여 사유	[ ]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[ ]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		

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6 및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[ ] 재발급 [ ] 재부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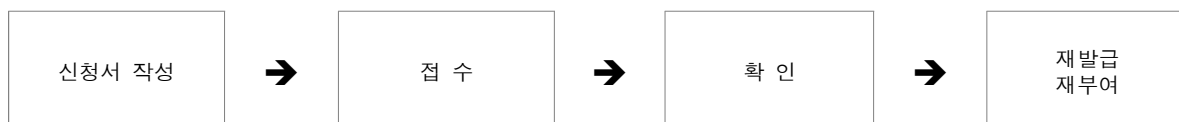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수입인지 붙이는 곳

첨부서류	1.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가. 잃어버린 경우: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나. 찢어 못 쓰게 된 경우: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다.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: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2. 자격증 재부여의 경우: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(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	수수료 2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